

(9)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목적 주식양도에 대한  
증권거래세 면제(조특법 §117① 2호의5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대상)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증권매매업자</li> <li>○ (거래) 주권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(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함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에만 적용</li> </ul> </li> <li>○ 적용기한: '17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

**<개정이유>** 개별 주식선물·옵션시장의 활성화 지원

**<적용시기>** '15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